

## 【 11 】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5. 10

제출자 : 양주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 「지방세법시행령」(2004.12.30, 대통령령 제18610호),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중단 되며, 자동차세의 일부세율 조정 및 주행세·담배소비세 세율인상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안 제25조 내지 제33조의 2)
- 나.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안 제38조)
- 다.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안 제43조)
- 라. 면세담배 유출에 따른 세수탈루 방지를 위해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

- 계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납세의무자 추가(안 제57조)
- 마. 대통령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  
소비세 세율로 적용할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안 제59조)
- 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택  
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87조, 안 제89조, 안 제90조, 안 제91조, 안  
제93조, 안 제94조, 안 제96조, 안 제97조, 안 제98조)
- 사. 도시계획세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  
계획세 세율인하(안 제95조)

양주시조례 제 호

##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6조 내지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 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2. 건축물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녹지지역내의 영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3. 주택

-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4. 선박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촉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체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1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제명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각호 내지  
제2항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3조의1을 제33조의2로 하고, 같은조 제명중 “건축물”을 “토지·건축  
물 및 주택”으로 하며, 같은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  
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  
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  
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중 “제33조의1”을 “제33조의2”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표>중 영업용과 비영업용란의 배기량 “1,500시시이 하” 를 각각 “1,600시시 이하”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1,000분의 175” 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8절 종합토지세(제75조 내지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9조중 “제4호 및 제5호” 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90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 을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 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을 “재산 세과세대장” 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 을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 으로 한다.

제93조 및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 규정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5조중 “1,000분의 2” 를 “1,000분의 1.5” 로 한다.

제96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8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과세대장에”로 한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제9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23조제1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30조중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를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로, 제38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제46조제3항중 “농업 · 농촌기본법”을 “「농업 · 농

총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u>8. 종합토지세</u></p> <p>③(생 략)</p> <p>제25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u>건축물·선박 및 항공기</u>(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p> <p>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 7.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③(현행과 같음)</p> <p>제25조(과세대상등)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p> <p>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p>

현 행	개 정 안
<p>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u>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u></p> <p>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p> <p>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재산으로서 종종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p> <p>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p> <p>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p>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 규정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8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 -----.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가.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현 행	개 정 안						
<p>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상업지역·녹지지역내의 영제 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라. 가목 내지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2. 선박</p> <p>가.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나. 가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다. 분리과세대상</p> <p>(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 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 준액의 1,000분의 2</p> <p>2. 건축물</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 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 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8조의 규 정에 따른 상업지역·녹지지역내의 영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40</p> <p>나. 가목외의 주택</p> <p>&lt;과세표준&gt; &lt;세율&gt;</p> <table> <tr> <td>4천만원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초과</td> <td>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4천만원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천만원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현 행	개 정 안
<p>②(생 략)</p> <p>&lt;신 설&gt;</p>	<p><u>4. 선박</u>  <u>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u>  <u>나. 가목 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u></p> <p><u>5. 항공기</u>  <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u></p> <p>②(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p> <p>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전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p>



현 행	개 정 안
<p>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li> <li>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li> <li>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 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li> <li>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li> </ol> <p>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li> <li>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li> <li>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li> <li>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li> <li>5.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 지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li> <li>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li> <li>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li> </ol> <p>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p> <p>-----</p> <p>-----</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구판사업등 <u>건축물</u>에 대한 감면)</p> <p>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li> <li>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u>건축물</u></li> <li>3. 생산 및 검사사업용 <u>건축물</u></li> <li>4. 농어민 교육시설용 <u>건축물</u></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u>건축물</u>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33조의1(<u>건축물</u>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u></li> <li>2. <u>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u></li> <li>3. <u>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u></li> <li>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li> <li>5. <u>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li> <li>6.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li> </ol>	<p>제32조(구판사업등 <u>부동산</u>에 대한 감면)</p> <p>①----- ----- ---. 1.----- <u>부동산</u> 2.----- <u>부동산</u> 3.----- <u>부동산</u> 4.----- <u>부동산</u> ②----- <u>부동산</u> -----</p> <p>제33조의2(<u>토지·건축물 및 주택</u>에 대한 신고의무)</p> <p>----- ----- ----- ----- ----- 1. <u>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u> 2. <u>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3. <u>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u> 4. <u>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u> 5. <u>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 6. <u>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 7. <u>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u></p>



현 행	개 정 안
<u>제8절 종합토지세</u>	<u>&lt;삭 제&gt;</u>
<u>제75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모든 토지로 한다.</u>	<u>&lt;삭 제&gt;</u>
<u>제76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u> <u>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u> <u>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u> <u>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u> <u>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u> <u>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u> <u>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u> <u>의무자로 본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u> <u>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u>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u>	<u>&lt;삭 제&gt;</u>
<u>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u> <u>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u> <u>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u> <u>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u>	
<u>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u> <u>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u> <u>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u> <u>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u>	
<u>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u> <u>있는 사실상의 종종토지로서 공부상</u> <u>의 소유자가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u> <u>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u>	
<u>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u> <u>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u> <u>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u> <u>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u> <u>우에는 그 매수계약자</u>	

현 행	개 정 안
<p>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p>	
<p>③ 종합토지세 평가기준일 현재 소유권의归属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lt;삭 제&gt;</p>
<p>제77조(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p>	
<p>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p>	

현 행	개 정 안
<p><u>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u></li> <li>2. <u>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u></li> <li>3. <u>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u></li> <li>4. <u>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u></li> <li>5. <u>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u></li> <li>6. <u>제3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u></li> </ol> <p>③ <u>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u></p>	

현 행	개 정 안												
<p>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 를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 의 가액으로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 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 의 50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당 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 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제78조(세율) 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 로 한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5px;">&lt;과세표준&gt;</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5px;">&lt;세율&gt;</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초과 4만원+2천만원초과금액의 5천만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만원초과 13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억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초과 38만원+1억원초과금액의 3억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초과 178만원+3억원초과금액의 5억원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10</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4만원+2천만원초과금액의 5천만원이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3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억원이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8만원+1억원초과금액의 3억원이하	1,000분의 7	3억원초과 178만원+3억원초과금액의 5억원이하	1,000분의 10	<p>&lt;삭 제&gt;</p>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4만원+2천만원초과금액의 5천만원이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3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억원이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8만원+1억원초과금액의 3억원이하	1,000분의 7												
3억원초과 178만원+3억원초과금액의 5억원이하	1,000분의 10												

현 행	개 정 안
<p><u>5억 원초과</u> 378만원 + 5억 원초과금액의  <u>10억 원이하</u> 1,000분의 15</p> <p><u>10억 원초과</u> 1,128만원 + 10억 원초과  <u>30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20</p> <p><u>30억 원초과</u> 5,128만원 + 30억 원초과  <u>50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30</p> <p><u>50억 원초과</u> 1억 1,128만원 + 50억 원  <u>초과금액</u>의 1,000분의 50</p> <p><u>②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과세표준&gt;</u>      <u>&lt;세율&gt;</u></p> <p><u>1억 원이하</u>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u>1억 원초과</u> 30만원 + <u>1억 원초과</u>  <u>5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4</p> <p><u>5억 원초과</u> 190만원 + <u>5억 원초과</u>  <u>10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5</p> <p><u>10억 원초과</u> 440만원 + <u>10억 원초과</u>  <u>30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6</p> <p><u>30억 원초과</u> 1,640만원 + <u>30억 원초과</u>  <u>50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8</p> <p><u>50억 원초과</u> 3,240만원 + <u>50억 원초과</u>  <u>100억 원이하</u> 금액의 1,000분의 10</p> <p><u>100억 원초과</u> 8,240만원 + <u>100억 원</u>  <u>300억 원이하</u>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p> <p><u>300억 원초과</u> 3억 2,240만원 + <u>300억 원</u>  <u>500억 원이하</u>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p> <p><u>500억 원초과</u> 6억 2,240만원 + <u>500억 원</u>  <u>초과금액</u>의 1,000분의 20</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7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li> <li>2. 풀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액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1,000분의 50</li> <li>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li> </ol>	
<p>제7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80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li> <li>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li> <li>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li> <li>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81조(부과징수등) ① 종합토지세는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② <u>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u></p> <p>③ <u>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제82조(세액조정) <u>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차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u></p>	<p>&lt;삭 제&gt;</p>
<p>제83조(신고의무) ① <u>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u>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 <u>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p> <p>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4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85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제86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토지</u>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li> <li><u>2. 건축물</u>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li> </ol>	<p><u>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u></p>
<p><u>제8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u>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u>&lt;신 설&gt;</u></li> <li><u>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li> <li><u>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시작한시기</u></li> </ol>	<p><u>제8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u></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u>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li> <li><u>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li> <li><u>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시작한시기</u></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9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u>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u>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②----- ----- ----- ----- <u>재산세과세대장</u>----- ----- -----.</p>
<p>제9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 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u>토지 또는 건축물</u>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토지 또는 건축물</u>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u>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 ----- ----- ②-----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p>
<p>제93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p>	<p>제93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 규정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7조(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남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 이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97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남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 조, 용도, 총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중축, 개축 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 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 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총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 자가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남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 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남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 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남세의 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p>

현 행	개 정 안
<p>제98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u>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u>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u>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u>  <u>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u>  <u>으로 본다.</u></p> <p>제98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  -----  <u>토지 · 건축물 또는 주택</u> -----  ----- <u>재산세과세대장에</u>  -----  -----  -----.</p>